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5. 1. 6. 개정 판 (시행 2024. 9. 1.) → 2026. 8. 31. 개정 판 (시행 2026. 9. 1.)

바뀐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94/compare?from=1597&to=1717>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4:19:54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으로 하되 유고시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재무처장, <u>최고경영자과정 책임교수, 시니어모델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로 한다.</u>〈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2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u>장학위원회 위원장</u>”(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대학원</u> 장으로 하되 유고시 <u>주임교수로 한다.</u> 위원은 <u>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u>로 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5조(장학생 추천) ① 매 학기말 사전안 제출 시, 장학생 선발위원장은 다음 학기 장학생 대상 후보자 약간 명을 장학위원회의 위원들과 선발하여 점수와 명부를 제출한다. ② 장학위원회 서기는 매 학기말까지 장학생 추천 대상자 명부를 종합하여 비치하고, 다음 학기에 장학생 선발 추천 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제6조(장학생 선발 절차) 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 각 항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외부로부터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정한 학생이 장학생 추천 의뢰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⑤ 수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수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⑥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장에 등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다. ⑦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학비감면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제적 2/3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한다.	제6조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